

원주의과대학 의예과·의학과 성적급락에 관한 내규

제 정 1978. 3. 1.

개 정 2025. 4. 1.

제1조

원주의과대학은 학년제를 적용하므로 학사에 관한 내규 제7조(능력별 학점 취득 및 초과신청)를 적용받지 않는다.

제2조

원주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은 학칙 제37조(학점)에 준하여 학점은 각 학과목의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에 비례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

학칙 제44조(출석의무)의 수업시간 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. 수업 시간수의 1/3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. 수업시간 수는 학사일정에 명기된 시간을 말한다.

제4조

시험은 수업한 학과목에 대하여 정기 혹은 임시로 시행한다. 정기시험은 학기 중이나 학기 말에 시행하며 임시시험은 각 과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한다.

제5조

- ① 성적평가는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평가하되, 1학기는 학기별로, 2학기는 학년별로 한다.(단 의학과 3학년 성적평가는 학년 단위로 시행한다.)(단, 2024학년도 의예과 및 의학과 성적평가는 학기별 또는 학년별 혼용을 한시적 시행함)
- ② 학업 성적의 평가는 학칙 제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 단, 성적평가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주의과대학 성적평가 지침에 따른다.

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(96입학생까지)	
등 급	평 점
A	4
B	3
C	2
D	1
F	0
1997학년도 이후 입학생(97입학생부터)	
등 급	평 점
A ⁺	4.3

A ⁰	4.0
A-	3.7
B ⁺	3.3
B ⁰	3.0
B-	2.7
C ⁺	2.3
C ⁰	2.0
C-	1.7
D ⁺	1.3
D ⁰	1.0
D-	0.7
F	0.0

③ 성적사정은 원주의과대학 상임교수회에서 수행한다.

제6조 재시험 및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- ① 재시험 시행시기는 학기말(의학과 3학년은 학년말)로 하고 응시자격은 학기별 또는 학년별(의학과 3학년은 학년 단위) 평량평균 1.75/4.30만점 이상이며, F학점(채플 제외 NP 포함)이 1과목일 경우에 한한다.
- ② 졸업시험 또는 재학습 운영 과정은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본 내규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재시험 성적은 가(D-, P), 부(F, NP)로 한다.
- ④ 추가시험 자격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험에 불참한자로서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심사 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성적의 80%를 고시성적으로 인정한다.

제7조 연세대학교 학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기 또는 학년 진급을 불허한다.

- ① 학년별 평량평균이 1.75/4.30만점 미만인 경우
- ② 학기별 또는 학년별(의학과 3학년은 학년말) 1과목 이상 F(채플 제외 NP포함) 학점일 경우
- ③ 1학기 유급한 학생의 경우 다음학기는 휴학하며 유급했던 학년, 학기로 복학하여 복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④ 유급을 받을 경우 의예과는 2회째, 의학과는 3회째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.
- ⑤ 학년단위 성적평가지 당해연도 휴학한 학생의 경우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.

제8조 유급 성적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(유급학점대체)

1. 의예과, 의학과 1, 2, 4학년에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B-이상 과목의 성적은 재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. 단, 성적이 B-이상이라 할지라도 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재이수 하여야 한다.
2. 의학과 3학년에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모든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이를 재이수하여야 한다.

제9조

총 재학연한은 9년을 넘지 못한다. 단,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의예과(1, 2학년) 3년, 의학과(1, 2, 3, 4학년)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0조(징계 받은 자 및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)

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준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198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(2004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).
7.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, 제8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)
8. 이 개정 내규 「명칭 변경, 제3조 개정」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, 2017-1학기부터 적용한다.
9. 이 개정 내규 「제8조 개정(의학과 4학년 유급성적 인정)」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개정 내규 「제10조 개정」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이 개정 내규 「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 개정」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12. 이 개정 내규 「제5조의 ① 개정」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,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(단, 2024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)
13. 이 개정 내규 「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 개정」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